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강선우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우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

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옹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오세일 전문위원)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의 주체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을 하위법령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 제2조의2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법제적인 측면에서 현행법 제5조제2항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제2호의2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9호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일부 자구를 정비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현행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제5조제2항제2호의2가 같은 항 제9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항 제9호에 제2호의2를 명시하여 자구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제5조제2항제9호).

수정주요내용

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변경함(제5조제2항제9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u>사회서비스 실태조사</u>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 <u>제5조의2에 따 른 사회서비스 실 태조사</u> ----- ----- ----- ----- ----- -----, ----- ----- ----- -----,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본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설>	2의2. <u>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u>	2의2. (개정안과 같음)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3. ~ 8. (개정안과 같음)
9. <u>제1호부터 제8호까지</u> 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9. <u>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u> ----- ----- -----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u>사회서비스 실태조사</u>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 ----- ----- ----- -----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u>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9. <u>제1호부터 제8호까지</u> 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u>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u> ----- ----- -----

10. (생 략)

<신 설>

10.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